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1월 10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4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관련 [별표 1] <공무원근로자 정원표>의 합계란 중 “99” 를 “98” 로 하고, 같은 표 일반직란 중 “72” 를 “71” 로 한다.

제60조(자녀학비보조수당)를 삭제한다.

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무원근로자 중 위험한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및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[별표 2]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1조 관련 [별표 2] <공무원근로자 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 기준>의 “자녀학비” 를 삭제한다.

제61조 관련 [별표 2] <공무원근로자 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 기준>의 “관리수당

(성폭력·가정폭력통합상담소)” 을 삭제한다.

제61조 관련 [별표 2] <공무직근로자 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 기준>의 “특정업무 수행수당” 을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